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18. . . (제 회)	

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재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18. . .

법무규제개혁담당 심사필

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18. . .

제출자 : 고령군수

1. 개정이유

법제처 협업과제 및 규제개선 과제 정비에 따른 상위법 위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 규정 삭제 (안 제17조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서 무상사용기간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삭제

나. 청사의 부지 규정 삭제(안 제46조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시행령 제9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별표1에 청사의 부지 규정이 있으므로 조례 삭제

3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과 같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」

나. 입법예고 기간 및 결과 : 해당없음

다. 예산관련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 분석 결과 :

마. 규제영향 분석 결과 :

조례 제 호

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본문을 삭제한다.

제46조 본문을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7조(무상사용기간)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7조< 삭제 ></p>
<p><u>제46조(청사의 부지)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「건축법」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</u></p>	<p>제46조< 삭제 ></p>